

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. 11. 18 선고 2021가단106688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1. 11. 18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의령등기소 2003. 7. 31. 접수 제629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)

판사 고권홍

별지